

[] 일반
[] 간이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1. 신고인 인적사항

① 상호(법인명)	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성명(대표자명)	④ 전화번호
⑤ 사업장(주된 사업장) 소재지	
⑥ 업태	⑦ 종목

2. 과세유형 전환 내용

※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.				※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.			
⑧ 일반과세 적용시기	년 월 일부터			⑩ 간이과세 적용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⑨ 일반과세 적용사유	일반과세 전환통지	간이과세 포기신고	기타	⑪ 간이과세 전환통지일	년 월 일		

3. 재고품,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

⑫ 품명	⑬ 규격	⑭ 수량	⑮ 단가	⑯ 재고품 등의 금액	⑰ 재고매입세액 또는 재고납부세액	⑱ 보관장소	⑲ 취득일 (감가상각자산만 해당함)
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[]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
[]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간이]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① ~ ⑦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.
- ⑧, ⑨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.
- ⑩, ⑪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.
- ⑫ ~ ⑲는 과세유형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적습니다.
- ⑯: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재고매입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,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⑰: 재고매입세액 신고 시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고, 재고납부세액 신고 시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[√] 표시하고 작성일을 적은 후 신고인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.